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6. 2.>

수수료(제35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전 자 민 원	방문·우편민원
1.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허가(신규)	45,000원	50,000원
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면제한다.	27,000원	30,000원
다.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2,000원	5,300원
2.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	25,000원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 음	없 음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8,300원	9,300원
(나)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3,800원	26,500원
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300원	9,300원
다.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2,000원	5,300원
3.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품목제조신고	18,000원	20,000원
나. 변경신고	9,000원	10,000원
다. 품목제조신고증 재교부신청	2,000원	5,300원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규격의 인정을 위한	1,000,000원	1,100,000원

신청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신청		
가. 신규신청	4,500,000원	5,000,000원
나. 변경신청	1,800,000원	2,000,000원
6.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7.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8,300원	9,300원